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 (안)

심 사 보 고

1999. 8. 2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8월 10일

○ 회부일자 : 1999년 8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1999. 8. 24)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유 의 재)

가. 제안이유

- 21C 본격 자치화·정보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유사·중복, 기능 쇠퇴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등 기구와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구성체계를 표준화하고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개칭
 - 의회사무처기구를 별도조례 제정 운영등 구성체계 및 조문정비
- 유사기능 통폐합 및 업무조정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을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로 이관
 - 「자치행정국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 총무과」로 이관
 - 「건설교통국 주택과」를 「문화진흥국 건축문화과」로 이관
 - 「재난관리과」와 「재해대책과」를 통합하여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로 이관
- 충북개발사업소(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 김 동 응)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공직사회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전국 표준화하고, 의회사무기구는 별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업무기능 조정으로 기획조정실의 조직관리 업무,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업무, 정보·통신업무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한편 도정정책연구 기능을 신설하였고,

자치행정국의 재난관리 업무는 건설교통국으로, 총무·인사기능은 인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부지사 직속기구로 하고, 복지환경국의 아동복지 업무는 여성정책관실로, 건설교통국의 주택관련 업무는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로 각각 그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 개발사업소는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제2차 구조조정은 기구개편보다는 실국간 합리적 기능조정애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구의 개편이나 기능 조정시에는 무엇보다도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금번 제2차 구조조정에서는 1차 구조조정시 조정된 통신업무등이 다시 환원되어 공직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기획조정실에 기획기능과 유사한 도정정책 연구기능의 신설이나 복지환경국 아동복지 업무의 여성정책관실로의 기능조정, 총무·인사기능의 부지사 직속기구 설치등도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등) 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도 본청

제4조(부지사) ①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③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농정국,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4. 도정 주요정책개발·심의·조정
5.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6. 도정전반의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7.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8.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9.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0. 통계의 처리와 유지관리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2. 시·군행정 및 인사운영 지도·조정·협의
3.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5. 행정능률 향상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재산관리와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
8. 지역정보화 정책 개발·심의·조정
9. 전산행정 및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농향의 분석관리
2. 유통진흥, 소비자보호,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 노사협력, 산업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광업, 에너지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9. 공업화 시책 추진 및 기업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경노복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2. 가정의례 및 묘지에 관한 사항
3. 의료보험, 의료보호,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5.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사항
6.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7. 보건, 의무, 약무, 정신재활 및 위생에 관한 사항
8.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과 수질관리 및 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9.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10.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관리

제10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어민후계자 인력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5. 농지의 보전·이용,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수·축 임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8.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추진
9. 양정·양곡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0.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
11. 축산, 수산, 산림에 관한 사항
12.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

제11조(문화진흥국) 문화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
2.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
3. 생활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
4. 건전 청소년 육성
5.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조정
6.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7. 관광지개발 및 관리업무
8. 주택건설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
9. 건축문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

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면허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건설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7. 하천관리 및 방재대책 집행
8.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의 종합계획·조정
9. 교통·운수·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소방공무원교육·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
4.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제14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대학은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제15조(학장)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16조(운영조례 및 학칙) ①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절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제17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18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운영) 교육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21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술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22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농산물의 우량품종 육성 선발과 우량종자의 생산
3.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이용 연구
4. 농업경영,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연구
5.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농업과학기술 보급
6. 농업환경 보전과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7. 농업인 단체의 조직 및 육성
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9. 우량 잠종·상묘의 생산 과 시험 검사 및 잠전검사용 기계운용 관리
10. 마곡, 맥류, 기타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 보급
11. 중앙정부의 관련 시험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2. 농촌생활 개선지도
13.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특화작목시험장 등) ①기술원에 충청북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포도시험장, 단양마늘시험장, 음성시설채소시험장을 둔다.

②기술원에 잠종의 개발보급, 농산물원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잠사균이시험장 및 종자생산시험장을 둔다.

③특화작목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의 명칭 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절 충청북도보전환경연구원

제25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보전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보전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26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급만성 전염병 진단·식의약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 환경측정망 운영 및 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전환경연구원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검사 연구에 관한 사항

제5절 소방서

제28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29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 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1조(파출소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파출소와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 업 소

제1절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제3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이하“개발사업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개발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3조(소장) 개발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개발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책사업관련 도 추진사업 기획 및 시행
2. 오송신도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

제2절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제35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도로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6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2.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3.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4.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5.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6. 중장비 운영 및 대여관리
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보수자재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제38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제3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0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
2.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
3.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4.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검정
5. 지방사업 설계 및 시공
6. 산사태 예방 및 복구
7. 휴양림 조성 관리
8.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
9. 자연보호에 관련한 도민연수에 관한 사항
10.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 연구

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제42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 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축산위생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3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소관사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산물의 검사·분석과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
2. 축산위생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3.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
4.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

제45조(지소)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

제46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여성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47조(관장)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여성회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2.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3.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4. 여성 기술인력 양성
5. 각종시설물 대여사업
6.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6절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

제4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시험장은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

제50조(장장) 시험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
2. 담수어 종묘생산 보급 및 회귀어종 양식
3. 지역 특성어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
4. 양어기술 지도교육 및 양식 적지 조사
5. 기타 담수어 양식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소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천전문대학 산림환경연구소(자연학습원 포함), 여성회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별표1〕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잠사군이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옥천포도시험장	옥천군 관내
단양마늘시험장	단양군 관내
음성시설 채소시험장	음성군 관내
잠사군이시험장	청주시 관내
종자생산시험장	진천군 관내

〔별표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 청주소방서	청주시 관내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일원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충주시 관내	충주시 일원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제천시 관내	제천시, 단양군 일원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영동군 관내	영동군, 옥천군 일원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괴산군 관내	괴산군, 진천군 일원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음성군 관내	음성군 일원